

---

# 1

## 민방위대 편성 지침

---





## Contents

<b>I</b>	<b>편성 개요</b> .....	<b>5</b>
	1. 편성 근거 .....	5
	2. 편성 방침 .....	5
	3. 편성 관리 .....	5
<b>II</b>	<b>편성 대상자 및 제외자</b> .....	<b>8</b>
	1. 민방위대 대상 .....	8
	2. 편성 의무자 .....	8
	3. 편성 지원자 .....	9
	4. 편성 제외자 .....	10
<b>III</b>	<b>편성 방법 및 절차</b> .....	<b>16</b>
	1. 통·리 민방위대 .....	16
	2. 민방위 기술지원대 .....	21
	3. 직장 민방위대 .....	24
	4.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	27
<b>IV</b>	<b>민방위대 운영 다양화</b> .....	<b>29</b>
	1. 통합 민방위대 .....	29
	2. 연합 민방위대 .....	31
	3. 지원 민방위대 .....	32



**V 민방위대 변동신고 ..... 33**

- 1. 학생신분 변동신고 ..... 33
- 2. 직장 민방위대 대원 변동신고 ..... 34

**VI 행정 사항 ..... 35**

- 1. 민방위대 편성지침 시행 및 안내 ..... 35
- 2. 민방위대 편성정보 안내 ..... 36
- 3.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 현행화 ..... 37
- 4. 민방위 스팸문자 피해예방 홍보 ..... 38

**VII 참고자료 ..... 41**

- 참고 1 화생방분대 편성요령 ..... 42
- 참고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 43
- 참고 3 민방위대 편성관련 주요 Q&A ..... 59

# 민방위대 편성 지침

## I 편성 개요

### 1 편성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 2 편성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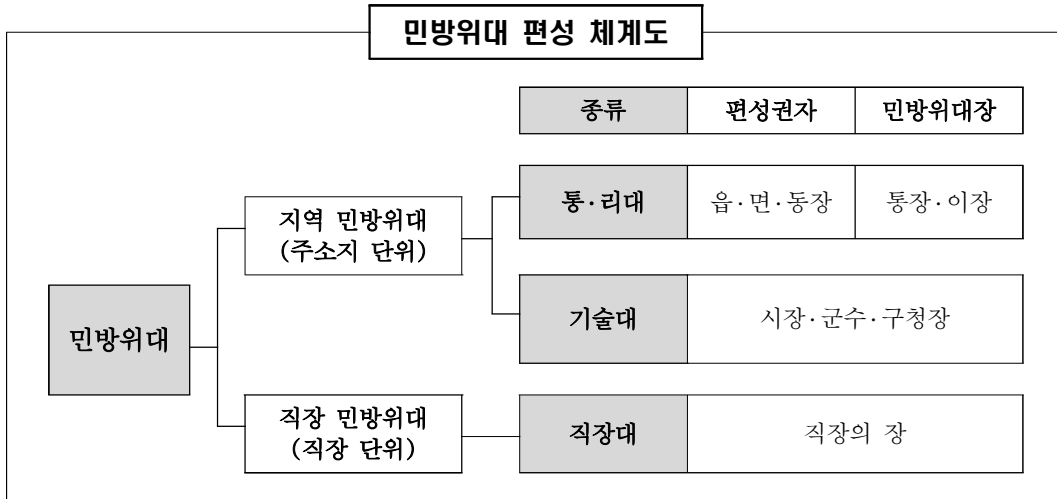
- 편성 대상을 철저히 정비하여 유사시 차질이 없도록 대비
  - 신규 편성 의무자, 편성의무 해제자, 편성 제외자, 편성 누락자 정비 등
- 편성된 민방위대 및 비상연락망 관리 철저
  - 대원의 임무·역할 통지 및 숙지, 비상연락망 정비 등

### 3 편성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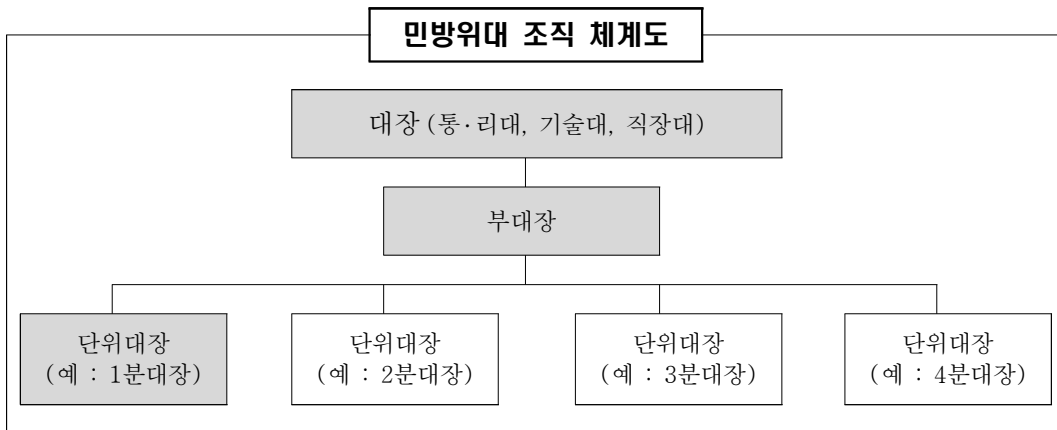
- 민방위대 편성 기준일 : 매년 1. 10, 16:00 기준
- 민방위대 편성 체계 및 종류 : 통·리, 시·군·구 별 주소지 단위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단위 직장민방위대로 편성
  - ① 지역민방위대 : 통·리 민방위대(통·리 단위, 이하 “통·리대”), 민방위 기술지원대(시·군·구 단위, 이하 “기술대”)
  - ② 직장 민방위대(직장 단위, 이하 “직장대”)



- 민방위대 편성권자
  - (통·리대) 읍·면·동장 / (기술대) 시장·군수·구청장 / (직장대) 직장의 장
- 민방위대 편성 순서
  - 기술대 → 직장대 → 통·리대 순으로 편성하고 중복 편성 금지
  - 민방위대 편성권자(읍·면·동장 등)가 직권으로 편성



- 민방위대 조직체계 : 대장, 부대장, 단위대장으로 조직
  - 부대장은 임무수행 자격 등을 고려하여 대장이 임명 및 지휘
  - 단위대장은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으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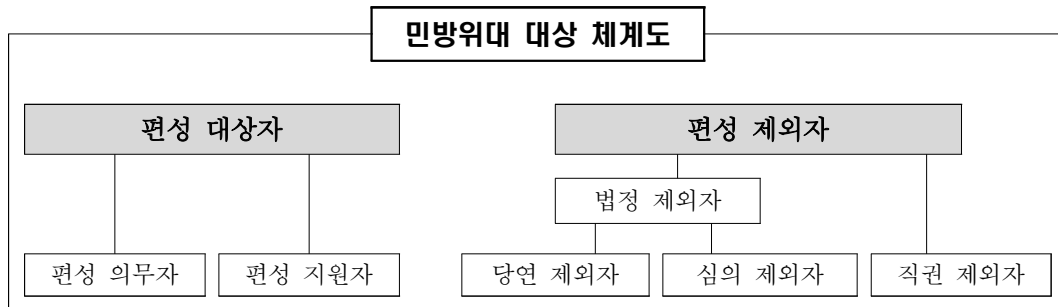
- 온라인으로 민방위대 편성·관리 및 보고
  -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편성·관리, 시스템 오류 등에 대한 편성내용 정확성여부 등을 수시 확인·점검(시·군·구, 읍·면·동)
  - 편성기준일 이전 편성 준비상태 확인·안내(시·도, 행정안전부)
  - 편성결과 보고(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 민방위대 편성이후 추가 발생된 편성대상자 관리
  - 편성 확정(매년 1월 10일) 이후 제외사유 소멸 등으로 추가 발생된 편성 대상자는 당해년도에는 편성만하고 익년도부터 교육훈련 실시
- 지원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 새올행정시스템이 아닌 서류 등으로 별도 편성·관리
    - \* 기존에는 기술대 하부 단위대로 편성·관리
  -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기존 지원민방위대는 삭제 처리
  - 지역대·직장대 편성 시 포함되는 지원자는 기존대로 시스템 상 등록·관리
- 민방위대 편성자원 결산 및 관리
  - (결산시기) 주 1회 자체 실시
  - (결산기관) 시·군·구(기술대, 직장대), 읍·면·동(통·리대)
- 민방위대 편성자원 일제정비 및 보고
  - (정비시기) 분기별 실시
  - (정비기관) 시·군·구(기술대, 직장대), 읍·면·동(통·리대)
  - (보고체계)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 (보고내용) 편성자원 결산내역, 변동현황 및 정비내역 등
    - \* 민방위대 편성자원 정기결산 보고서식 별도 통보
- 민방위대 편성명부 서류(또는 엑셀파일) 보관 및 관리
  - (관리시기) 분기별 업데이트 관리
  - (관리기관) 시·군·구(기술대, 직장대), 읍·면·동(통·리대)
    - \* “새올행정시스템 - 편성관리 - 편성명부 및 연명부” 메뉴 활용



## II 편성 대상자 및 제외자

### 1 민방위대 대상

- 편성 대상자
  -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 편성 제외자
  -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 『법정 제외자』
    - 『법정 제외자』 중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심의 제외자』
  - 편성권자(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 의한 『직권 제외자』



### 2 편성 의무자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21년 편성 의무자) 1981.1.1.~2001.12.31.생
  - (신규 편성자) 2001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1980년생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 3 편성 지원자

#### ① 지원 자격

-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 (만 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 ② 지원 신청

- 지원서류 :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지원서류 제출
  - 지역대 지원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 지원서류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면·동장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이송
  - 직장대 지원은 직장대 대장에게 제출

#### ③ 자격 상실

- 지역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 외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직장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진출한 경우

#### ④ 제외 신청

- 편성제외 대상
  -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신청서류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서류 제출
  - 지역대 대원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직장대 대원은 직장대 대장에게 제출



## 4 편성 제외자

## 1 제외 대상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구분	법정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신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공무원</li> <li>소방공무원</li> <li>교정직공무원</li> <li>소년보호직공무원</li> <li>군무원</li> <li>등대원</li> <li>청원경찰</li> <li>의용소방대원</li> <li>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li> </ul>	
병역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인</li> <li>예비군</li> <li>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li> <li>「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li> <li>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 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li> <li>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li> <li>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li> <li>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li> <li>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신 장애인</li> <li>만성 허약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li> </ul>

구분	법정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li> <li>•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 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li> <li>• 진단 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li> </ul>

- 직권 제외자 : 규정은 없지만 민방위대로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상자
  - \* 교육통지서 전달 불가, 교육 이행 불가 등
-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
    - 해당 읍·면·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실종자
    -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직권제외는 불가. 단,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될 수 있음



## ② 법정 제외자의 편성 제외 절차

### ○ 편성 제외 서류 제출 또는 직권 처리

-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에는 직권으로 편성제외 처리

\* 군인, 예비군 등

- 편성제외 대상자가 제외 신청 시 직권으로 제외 처리하되, 증빙서류\*는 징구 및 보관

\* 시스템으로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재직증명서, 학생 등의 경우는 재학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의 재직(재학)증명 공문으로 같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해당 증명사본 등

\* 증빙서류는 최초 1회만 징구하되, 제외사유 소멸 시 본인이 편성 신고해야함을 대상자에게 안내(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 ○ 편성 제외 신청에 따른 심의 처리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4호(심의대상 및 심의, 재심의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심사 결정)

- 심의 대상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인 심신장애인,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한 만성허약자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구분	법정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시행령 제17조 관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 장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 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 허약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li> </ul>

○ 재심의 처리

- 심의 대상자 중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한 만성허약자

○ 심의절차(처리기한 총13일, 제외 결정은 10일 이내 처리)



- 재심의 대상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매년 12.1.~12.20.까지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재심을 거쳐 제외 결정
-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의 구성·운영

○ 신청서류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서류에 첨부할 증빙서류

- 원칙적으로 심의 제외자임을 증빙하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 재심의 대상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매년 11.21.~12.10.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이미 제출된 재심의 대상자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면제
- 성전환자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성전환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의 제외자 처리



③ 민방위대 편성 사유발생 또는 사유소멸 시 신고 의무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0조

- 1항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본인 → 읍·면·동장(통·리대), 직장대장(직장대))
- 2항 :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자 신고(직장대장 → 읍·면·동장)

- 3항 : 통·리대와 직장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민방위대 변동사항 신고사항을 알림(읍·면·동장 → 통·리대장)
- 4항 : 직장 민방위대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 변경 신고(직장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 5항 : 민방위대 법정제외자 기준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 신고(직장의장 → 읍·면·동장)

구분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신고의무	
		사유발생 시	사유소멸 시
신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공무원</li> <li>• 소방공무원</li> <li>• 교정직공무원</li> <li>• 소년보호직공무원</li> <li>• 군무원</li> <li>• 등대원</li> <li>• 청원경찰</li> <li>• 의용소방대원</li> <li>•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li> </ul>	직장의 장 또는 본인	본인
병역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li> <li>• 예비군</li> <li>•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li> </ul>	직권처리 또는 본인	본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li> <li>•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li> </ul>	본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li> <li>•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li> </ul>	학교의 장 (시설의 장) 또는 본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 장애인</li> <li>• 만성 허약자</li> </ul>	본인	본인

★ 제20조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제3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칙이 있음

★ 직장의 장이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에 따라 5만원~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Ⅲ 편성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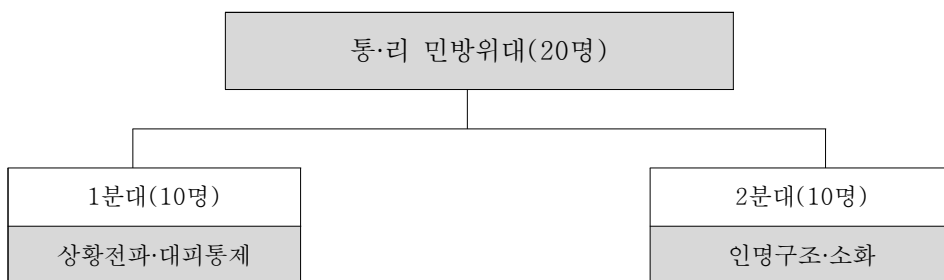
#### 1 통·리 민방위대

##### ① 편성 방법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편성권자 : 읍·면·동장
- 편제단위 : 통·리 단위로 편성·조직(대장 : 통장·이장)
- 편제기준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 통·리대는 대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등으로 편성하되 1개 통·리대는 최소 20명으로 편성(20명 미만은 통합 통·리대 편성)
  - \* 편성 결과 확인(정기검열 등) 시, 20명 이하 통·리대에 대해 통합 편성 노력 여부 점검

대원 규모	20 ~ 40인 미만	40 ~ 80인 미만	80 ~ 300인 미만	300 ~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단위대 조직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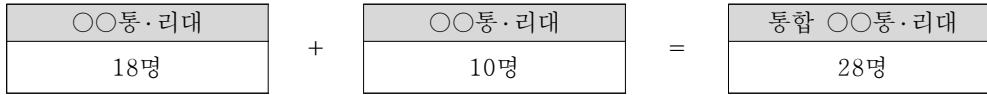
- 1개 통·리대는 최소 2개 분대, 분대 당 인원 10명(상황전파·대피통제, 인명구조·소화분대 각 10명)로 조직 \* 1개 분대는 최소 10인, 최대 20인으로 편성
- 통·리 민방위대 편성을 지역별 특성 및 재난유형에 맞추어 개편
  - \* 원전, 중화학단지 지역, 유류·가스저장시설, 산불, 수해, 폭설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군·책임 하에 단위대 및 임무를 특화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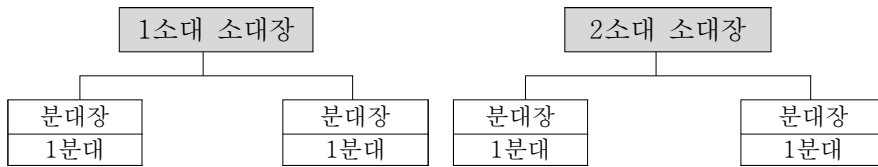


**민방위대 편성 예시**

- 1개 통·리대가 20명 미만으로 통합 통·리대를 편성하는 경우
  - 28명인 경우, 소대 없이 2개 분대 구성, 1개 분대 14명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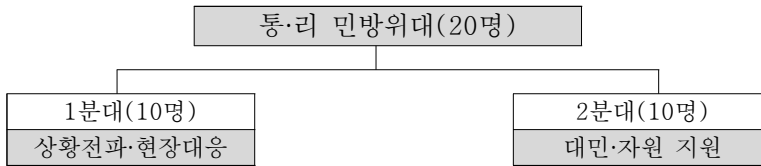


- 1개 통·리대가 40 ~ 80명인 경우(2개 소대, 4개 분대 편성)
  - 40명인 경우, 2개 소대 4개 분대, 분대 당 10명 편성
  - 80명인 경우, 2개 소대 4개 분대, 분대 당 20명 편성
  - 지역별, 안보역량, 재난빈도 등 특성에 따라 적정 규모로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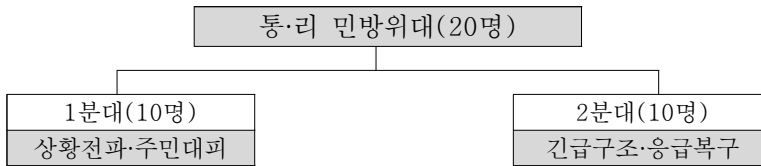


**지역특성 및 재난유형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예시**

- 산불, 풍수해 (태풍, 호우, 대설)



- 화학사고 (유류, 가스 등)



\* 예시의 분대편성을 참고하여 통·리 민방위대 편성을 지역별 특성 및 재난유형에 맞추어 개편하여 실질적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대 편성



단위대 분대 목록

지휘분대, 본부분대, 경보분대, 상황전파분대, 소화분대, 급수분대, 방호분대, 복구분대, 물자관리분대, 인명구조분대, 의료분대, 구호분대, 대피통제분대, 현장대응분대, 자원지원분대, 주민대피·유도분대, 긴급구조구대 응급복구지원분대, 대민지원분대

- 대원이 초과된 경우는 모듈형(상황전파 1, 2, 3, 4분대 등)으로 편성하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및 조직
- \* (예) 대원이 36명일 경우는 1개 분대 당 18명 편성, 2개 분대로 조직. 단, 대원이 400명 이상이면, 분대원수를 20명으로 편성
- 1개 소대는 최소 40명으로 편성하되 대원 규모에 따라 증·감 편성
- 중대, 대대, 연대는 소대 편제기준을 참고하여 편성
- 통·리 민방위대 편성을 지역별 특성 및 재난유형에 맞추어 개편
- \* 원전, 중화학단지 지역, 유류·가스저장시설, 산불, 수해, 폭설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군·책임 하에 단위대 및 임무를 특화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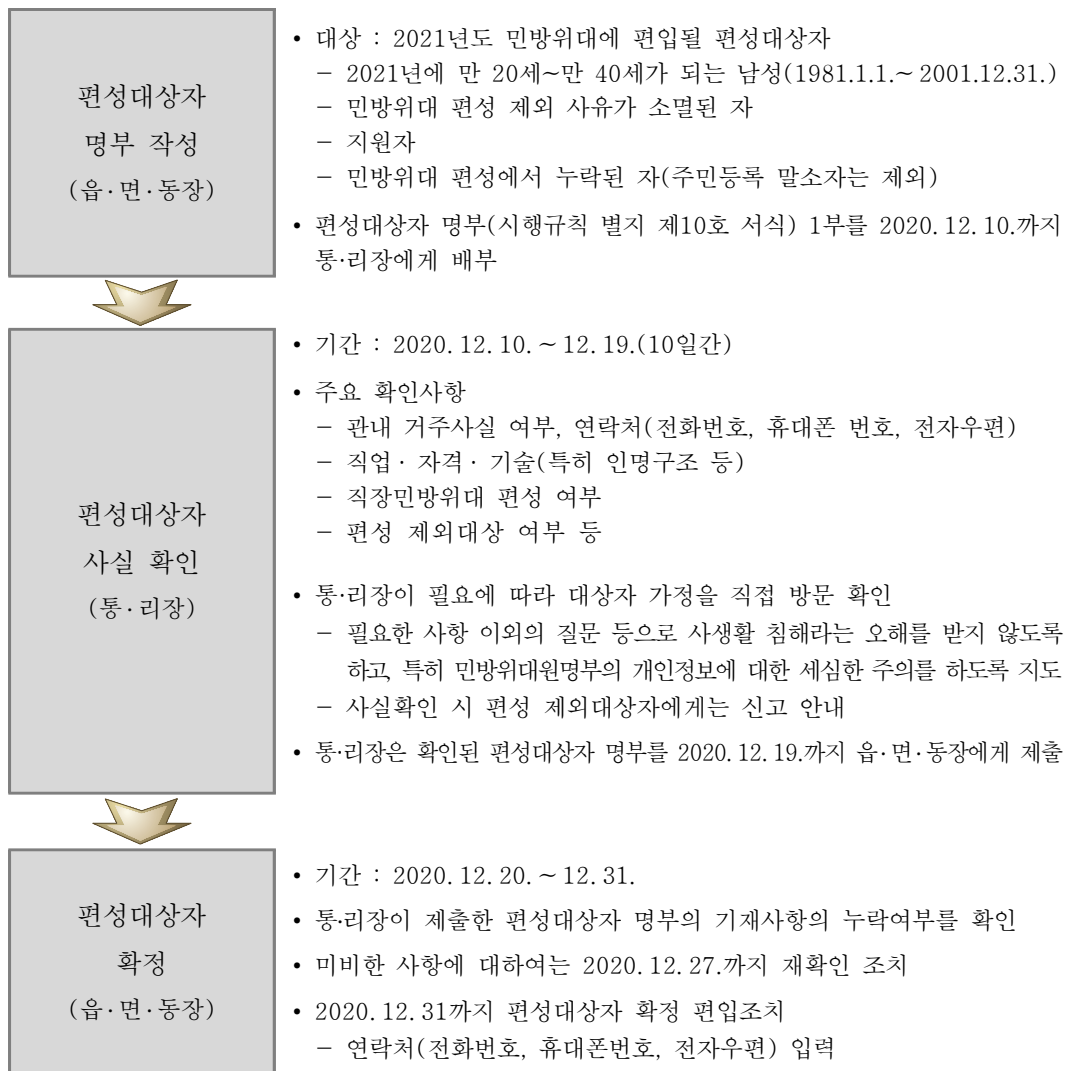
2 지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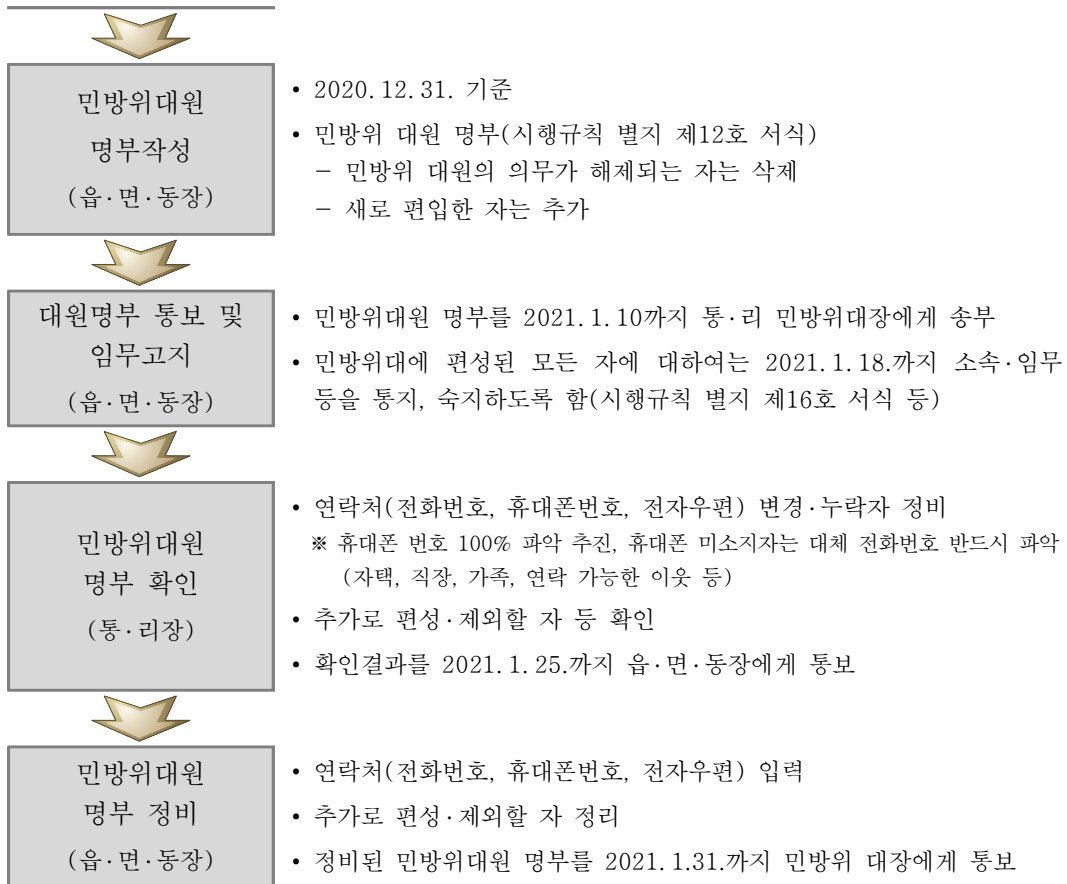
- 통·리대는 통·리대장(통장, 이장)이 지휘(민방위기본법 제19조)
  - 65세 이상 고령, 심신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읍·면·동장이 지휘통솔능력을 고려하여 통·리대장을 지정(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6항)
  - 고령, 심신허약 등으로 현장 지휘가 어려운 통·리대장은 의용소방대장, 주민자치회장, 아파트관리소장 등으로 대체 지정
- 통·리대장이 부대장을 임명, 통·리대장 유고시 부대장이 지휘, 단위대(분대, 소대, 중대 등) 대장은 상급 지휘대장이 임명
- 통합 통·리대는 선순위 통·리대장이 지휘, 후순위 통·리대장은 당연직 부대장(통합상황에 따라 1~3명 가능)으로 임명, 다음년도에는 같은 방식으로 윤번제로 운영
  - 통합 통·리대 분대는 가급적 기존의 분대 대원을 그대로 편성
  - 부대장(기존의 통·리대장)은 새로 선임된 통·리대장의 지휘를 받아 기존의 통·리대장 행정업무를 수행(새로 선임 통·리대장도 같음)

③ 임무 및 역할

- 민방위기본법령 상의 대장·대원의 임무·역할 숙지(고지) 및 수행
  - 대장·대원별 임무·역할 명확화, 편성사실·소속·임무 통지 등
- 단위대 및 대원 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수시 확인
  - 분대장이상 비상연락망 유지 및 연 2회 이상 불시 통신훈련 실시(분대단위는 분대장 책임 운영) 등

④ 편성 절차





※ 매년 민방위대에 편성된 모든 대원에게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 등 통지

## 2 민방위 기술지원대

### 1 편성 방법

- 편성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편제단위 : 시·군·구 단위로 편성·조직(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 편제기준
  - 시·군·구(자치구 및 일반구)별 1개 이상 기술대 편성
  - 1개 기술대는 80~200명으로 편성(인구 7만 이하 지역은 50명 이상 편성)
  -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 직군 및 장비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기타 직군(예시)은 유사 직군에 포함
  - 드론·로봇전문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자도 포함한 기술지원대 편성
  - \* 정보통신·EMP(전자기파) 재난 및 드론테러 등으로 피해발생 시 기술지원대 활용 응급복구 및 현장수습 지원 활용

< 기술자격 직군 예시 >

임무	기술 자격	장비 보유
총괄지휘	• 행정유경험자, 물자장비 관리 유경험자	
상황전파	• 무선통신사, 정보통신기술사 등	• 무선통신 기기
구조·구호	•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사, 의료자격소지자	• 드론·로봇
테러 및 화생방 조치	• 화 : 화공기사, 화약취급사, 화학분석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 생 : 미생물, 생리, 유전, 분자생물학 전공 • 방 : 방사선관리기술사, 핵 및 방사능학과 ※ 軍화생방 관련 병과 출신	• 화학탐지기 • 생물학탐지기 • 원거리방사능탐지기 • 화생방보호복
시설복구	• 통신전기 : 정보통신기술자, 통신기기기술자, 전기공사기술자 • 교통운송 : 차량기술사, 특수면허운전자 • 건설기계 : 건설기계기사, 건설기계운전자, 용접 및 금형기술자 • 건축·토목 : 토목기술자, 토목시공사, 건축설비기술자, 건축시공기술자	• 무전기(위성) • 굴삭기, 페이로더, 덤프트럭 • 매물자탐지기, 전기톱, 철근절단기, 유압절단기, 가변식원치 • 가교자재(I형강, 강판), 컨테이너
소화활동	• 소방관련 자격보유자	



- 1개 기술대는 최소 4개 분대(1개 분대 당 최소 20명, 인구 7만이하 지역은 최소 10명 이상)로 조직
- 단위대는 임무 위주로 4개 대로 조직하되 화생방대를 제외한 기타 단위대는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및 조직
- \* 화생방분대는 **【참고1】** 화생방분대 편성요령에 의하여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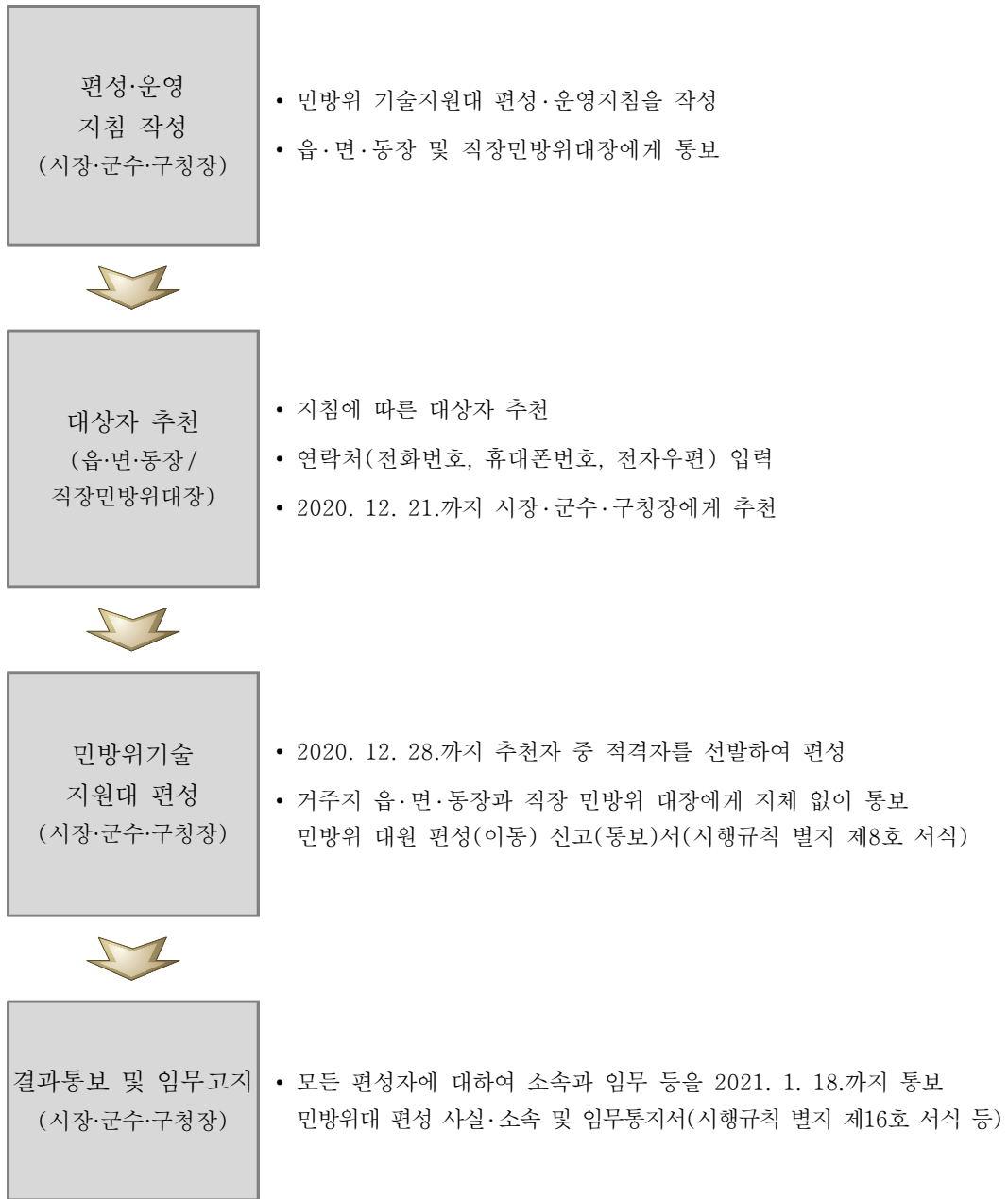
② 지휘 체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당연직 기술대 대장으로 임명
- 기술대 대장은 필요에 따라 단위대장의 지휘 통솔이 용이하도록 각 단위대의 하위대를 조직
- 부대장 및 단위대장은 지휘체계 확립 및 대원 간 연대감 제고를 위하여 소속 대원 중에서 기술대 대장이 임명
- 대원은 관할 직장대에서 자격+장비 동시보유자 및 지원자까지 확대하여 선발
- 대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리대에서 자격+장비 동시보유자 및 지원자를 선발하고 기타 자격보유자 순으로 선발

③ 임무 및 역할

- 시·군·구 이상 전국단위 민방위사태 발생 시 수습·복구 지원활동
- 민방위기본법령 상의 대장·대원의 임무·역할 숙지(고지) 및 수행
  - 대장·대원별 임무·역할 명확화, 편성사실·소속·임무 통지 등
- 단위대 및 대원 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수시 확인
  - 분대장이상 비상연락망 유지 및 연 2회 이상 불시 통신훈련 실시(분대단위는 분대장 책임 운영) 등
- 필요시 전문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4] 편성 절차



※ 매년 민방위대에 편성된 모든 대원에게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 등 통지



### 3 직장 민방위대

#### 1 편성 방법

- 편성권자 : 직장의 장
- 편제단위 : 사무소(사업소, 사업장) 단위로 편성·조직(대장 : 직장의 장)
- 편제기준
  - 직장대는 대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등으로 편성하되 1개 직장대는 최소 20명으로 편성(20명 미만은 통합 직장대 편성)
    - \* 대원 규모별 편성 및 단위대 조직은 통·리대 편제기준과 동일
  - 직장대는 부대장 1~2명과 필요한 단위대(분대, 소대 등)로 조직
  - 단위대는 임무 위주로 최소 4개 대로 조직, 직장 특성을 고려하여 본부·의료·구호·소수방·방호·복구·화생방 등 필요한 형태로 편성
    - \* 화생방분대는 **【참고1】** 화생방분대 편성요령에 의하여 편성
  - 단위대는 공장·건물·작업장·사무소 등 근무지 단위로 편성하고 평소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대원은 가급적 같은 단위대에 편성

#### 2 지휘 체계

-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대 대장으로 지정 가능
- 대장 유고시 부대장이 지휘권 행사, 부대장 유고시 편제에 따른 간부요원이 지휘권 행사

#### 3 편성 대상

- 의무적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li> <li>•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li> </ul>



② 공공기관 및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li> <li>•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li> <li>•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 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li> <li>•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 비상계획부서의 업체현황 참고(대외비)</li> <li>•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공공조합</li> </ul>

○ 지정에 의한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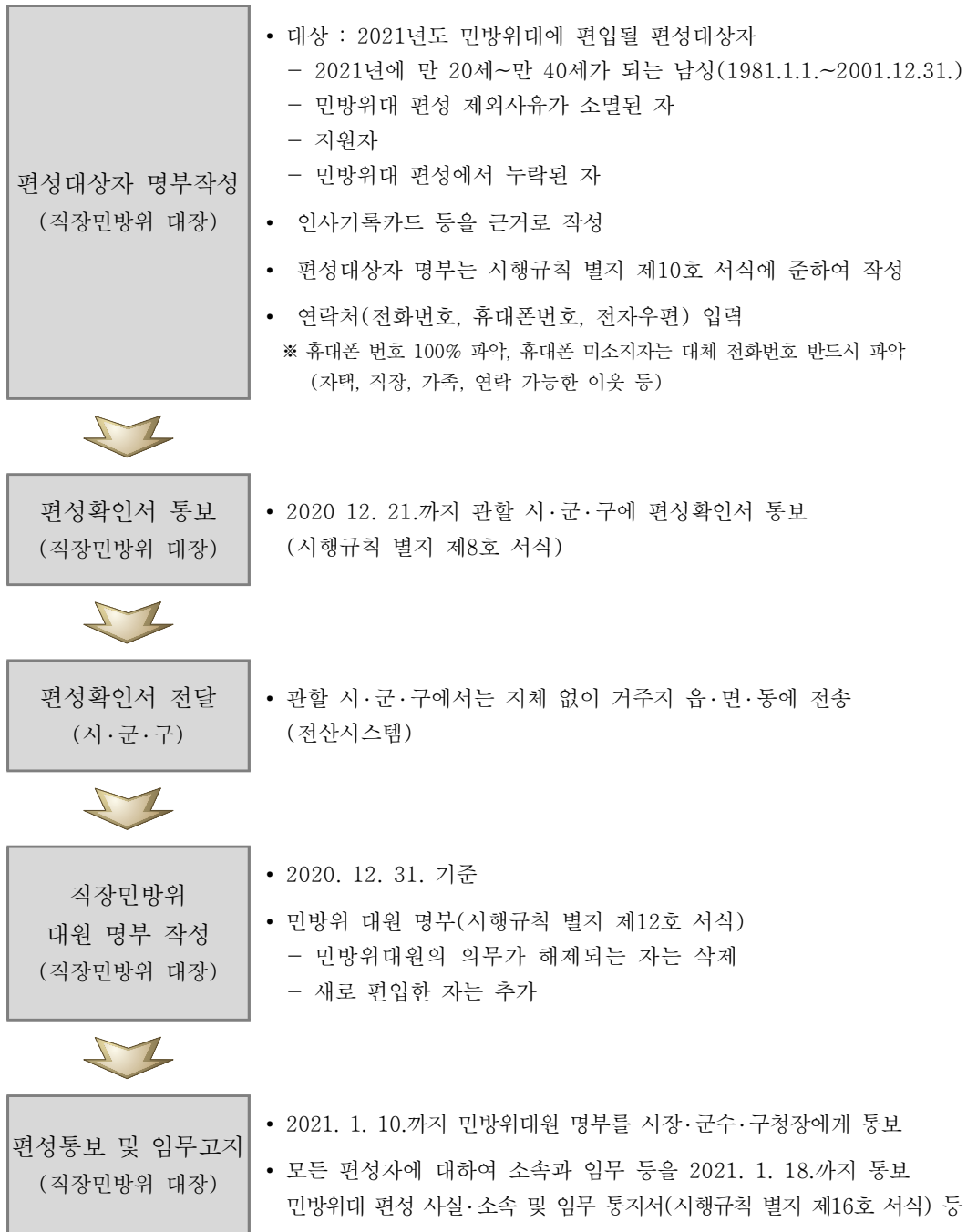
①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

②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된 소금산업제조업</li> <li>•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건빵·라면제조업</li> <li>•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정제업</li> <li>•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li> <li>•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판매업</li> <li>•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li> <li>•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li> </ul>

③ 기타 필요기관 및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li> <li>• 1일 3회 이상 연속하여 상영하는 상설극장</li> <li>• 방송국 및 송신소</li> <li>•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li> <li>•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사찰</li> <li>• 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li> <li>• 하나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구내 또는 건물 내의 둘 이상의 업체</li> <li>•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li> </ul>



#### 4] 편성 절차



※ 매년 민방위대에 편성된 모든 대원에게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 등 통지

4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 병역법에 따라 국방의무 수행을 위해 만 20세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여부 결정

<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

신체등급	병역처분	군복무	예비군	민방위
1~3급	현역	○	○	○
1~4급	보충역	○	○	○
5급	전시근로역	×	×	○
6급	병역면제	×	×	×
7급	재 신체검사	재검결과 후 최종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 병역처분은 학력·신체등급 기준 및 학력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개인의 배경 기준에 따라 판정을 받기 때문에 신체등급 결과와 병역처분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음

- 신체검사 결과 1~3급으로 판정되면
  - 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군 복무 전까지 민방위대 편성 보류
  - ② 입대 후 제대까지 군 복무
  - ③ 군 복무 후 예비군 편성
    - 군 복무 후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31.까지 편성
    - \*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은 만 40세 이상까지 편성
  - ④ 예비군 후 민방위대 편성
    -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만 40세까지 편성(만 41세 이상은 편성 제외)
    - \* 정확한 편성·관리를 위해 최종 예비군 편성기간 해당여부 확인
- 4급으로 판정되면
  - ① 보충역 입영대상자로 군 복무 전까지 민방위대 편성 보류
  - ②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



- ③ 군 복무 후 예비군 편성
  - 군 복무 후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31.까지 편성
- ④ 예비군 후 민방위대 편성
  -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만 40세까지 편성
  - 보충역 군 복무를 마친 군사훈련 미필자는 예비군 편성대상이 아니므로 민방위대로 편성(교육훈련은 다음해부터 실시)
- 5급으로 판정되면
  - 전시근로역 병역대상자로 군 복무 및 예비군 편성이 제외되므로 만 20세부터 민방위대로 편성(단, 학생 등 편성 제외대상 여부 별도 확인 필요)
- 6급으로 판정되면 군 복무, 예비군 및 민방위대까지 편성 제외
- 7급으로 판정되면
  - 재검결과 후 최종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여부 결정(최종 병역처분 결과 확정 전에는 민방위대 편성 보류)

## IV 민방위대 운영 다양화

### 1 통합 민방위대

#### ① 통합 대상

- (근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대상) 민방위 대원이 20인 미만인 소규모 통·리대 및 직장대

#### ② 통합 결정

- (통·리대) 읍·면·동장이 필요성 판단, 인근 통·리대와 통합 편성
- (직장대) 직장의 장이 필요성 판단, 시·군·구 내의 상위직장 또는 유사직종의 직장대와 통합 편성
  - 상위직장, 유사직종이 없는 경우는 인근 통·리대와 통합 편성
    - \* 민방위 대원이 20인 미만인 소규모 직장대(초·중·고)도 시·군·구 내의 상위직장 또는 유사직종의 직장대와 통합 편성

#### ③ 운영 방법

- 통·리대 ↔ 통·리대, 직장대 ↔ 직장대 상호간 통합이 원칙이고, 통·리대 ↔ 직장대 간 통합은 불가
- 직장대는 상위직장, 유사직종 직장대와 상호 협의하여 통합
- 직장대가 상위직장, 유사직종 직장대와 통합협의를 어려운 경우
  - 지정에 의해 편성된 직장대는 현행유지 또는 직장대 해체, 의무 편성된 직장대는 현행 유지
- 의무 편성된 직장대가 관할구역 내 통합할 직장대가 없는 경우
  - 해당 직장대는 직장 소재지의 읍·면·동의 직장대에 통합 편성, 읍·면·동장은 해당 직장대가 통합을 원할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통합 민방위대로 편성된 기존 통·리대장 또는 직장대 대장은 당연직 단위대장(부대장, 분대장, 소대장 등)으로 임무 및 지휘 수행



#### 4 통합 절차(직장민방위대)

편성안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직장대 통합편성 요령을 소규모 직장대 대장에게 안내 및 통합편성 증제



편성요구

- 소규모 민방위대장은 통합될 직장대 대장에게 통합편성 요구·협의



편성

- 소규모 민방위대장은 대원명부를 통합될 직장대 대장에게 제출
- 통합한 민방위대장은 통합 민방위대 편성
- 새올행정시스템상 통합/연합 민방위대 구성 메뉴에서 절차 진행
  - 사전에 통합 대표 민방위대 등록
  - 해당 통합 대표 민방위대 선택 → 통합 구성 민방위대 추가



편성신고

- 통합한 직장의 장이 통합편성 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및 민방위 대원 명부 [별지 제12호 서식]에 편제표 첨부

## 2 연합 민방위대

### 1 지역 연합

#### □ 연합 대상

지역	지역연합 민방위대 대상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등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재난 발생 시 공동대처 필요지역</li> <li>가로망 등의 단위로 주택 등이 밀집되어 하나의 단지로 형성된 지역</li> </ul>
농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수계, 저수지, 해안, 산골짜기 등 지형적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동일 영향권 안에 있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접 마을</li> </ul>

#### □ 운영 방법

- 대원이 가장 많은 통·리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읍·면·동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조직여부 통보
- 읍·면·동장은 각 통·리대장 중에서 지역연합 민방위대장을 지정 및 지휘 (읍·면·동장 → 연합 민방위대장 → 통·리대장)
- 지역연합 민방위대별로 비상소집훈련 및 교육훈련 실시

### 2 직장연합

#### □ 연합 대상

- 같은 공업단지(자유무역지역 포함)·구내 또는 건물 안에 2개 이상 직장대

#### □ 운영 방법

- 해당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대 대장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조직여부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직장대 대장 중에서 직장연합 민방위대장을 지정 및 지휘 (시장·군수·구청장 → 연합 민방위대장 → 직장대 대장)



### 3 지원 민방위대

□ 운영 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직장에서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운영

□ 임무 및 역할

-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 민방위사태시에는 대피안내 유도, 현장 수습·복구,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등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구분	주요 임무 및 역할
평시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요원 참여,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생활안전예방활동 및 홍보, 비상연락 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민방위사태시	군사작전 필요물자운반 노력 지원,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비상급수·관리 지원, 사후관리 복구 지원, 재난해제복귀지원 및 재난 피해자 지원





## 민방위대 변동신고

### 1 학생신분 변동신고

#### ① 신고 개요

-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5항
- (내용) 학교의 장은 학생자원 신고 시 전출·전입자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하여 신고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수집·이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절차) 학교의 장 →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학생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 학생 거주지 읍·면·동장

#### ② 운영 방법

- 학교(공공직업훈련시설 포함)의 장은 신고 내용을 시·도, 시·군·구별로 분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개인정보와 관련 사항으로 변동 신고 시 파일을 암호화해서 전달하도록 사전 안내
-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은 신고 받은 내용을 즉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통보
-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학교 현황을 파악, 학생신분 변동이 많은 졸업·입학 시기에 학교별 신고여부 확인·점검



## 2 직장 민방위대 대원 변동신고

### 1 신고 개요

-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2항
- (절차) 직장대 대장 →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 거주지 읍·면·동장

### 2 운영 방법

- 직장대 대장이 대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동 신고
-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받은 사항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서울행정시스템), 의무 불이행 발견 시 위반사항 통보
- 거주지 읍·면·동장이 직장대 대장으로부터 직접 변동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받은 내용을 통보
  -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하고 결과 통보



## 행정 사항

### 1 민방위대 편성지침 시행 및 안내

#### ① 행정안전부

- 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지도·점검 : 2020. 11월

#### ② 시·도

- 지침 교육 및 시·군·구 추진현황 현지 지도·확인 : 2020. 12월
- 편성결과 보고 : 2021. 1. 21.까지(시·도 → 행정안전부)

#### ③ 시·군·구

- 지침 교육 및 민방위대 편성 홍보 : 2020. 12월
  - 지방지, 지방방송,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제외 대상자, 제외사유 소멸자 등 신고방법, 과태료 부과 등 안내
- 신고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철저, 의무이행 확보
- 편성결과 보고 : 2021. 1. 16.까지(시·군·구 → 시·도)

#### ④ 읍·면·동

- 민방위대 편성 홍보 : 2020. 12월
  - 입간판 현수막 등(읍·면·동사무소 입구, 주민왕래 많은 곳) 설치, 제외대상자, 제외사유 소멸자 등 신고방법, 과태료 부과 등 안내
- 편성결과 보고 : 2021. 1. 14.까지(읍·면·동 → 시·군·구)



## 2 민방위대 편성정보 안내

### ① 개인별 편성사항 안내

- 개인별 문의사항은 본인의 주소지(지역대 소속) 또는 직장주소지(직장대 소속) 관할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게 문의  
\*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지자체 민방위 담당과 연락처 제공) 또는 114 이용

### ② 법령 및 편성지침 문의사항 안내

- 민방위기본법령 및 민방위 편성지침 관련사항(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044-205-4372)  
\* 문의체계 : 읍·면·동 담당자 → 시·군·구 담당자 → 시·도 담당자 → 행정안전부

### ③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편성현황 및 통지서상 교육일정 안내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정부24를 통해 본인의 민방위대 편성현황 및 교육훈련 통지서상 부여된 본인의 교육일정 등 확인  
(사이트 주소 : [www.gov.kr](http://www.gov.kr))

### ④ 새올행정시스템 문의사항 안내

- 민방위대 편성과 관련한 새올행정시스템 문의사항은 콜센터 이용(새올광장에 게시된 새올행정시스템 민방위행정 업무매뉴얼 참고)
- 시스템 관련 단순 기능개선 및 요청사항은 콜센터 및 새올광장 활용(새올행정시스템 콜센터 : ☎ 02-2076-5800)
- 직장대원 편입 신고는 편성 대상자 명부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 편성하기도 하지만,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전산으로도 처리 가능  
- 새올 전자민원 창구에서 민방위대장이 대원정보를 등록하면 시·군·구 민방위 담당자가 승인 적용

- 직장대 대장이 교육대상 대원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해당 기능은 [직장민방위관리>교육통지서 출력]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새올행정시스템상 민방위대 편성 개선 필요사항 요청
  - 각 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 민방위과(☎044-205-4372)로 요청

### 5 임무고지 시 편성 제외자 등 안내

- 법정 당연제외자 사유발생 및 소멸 시 신고의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민방위대 편성으로 민원야기
  - 민방위대원 스스로 본인의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 등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 대원으로서 기본적인 사항 인식 필요
- 임무고지 시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안내를 포함하여 명확히 고지
  - 민방위 관련 기본사항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등
  - 전산오류 등 이유로 민방위대에 편성된 제외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임무고지 시 법정 당연제외 사유 등을 함께 안내

## 3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 현행화

- 민방위 관련 대표 사이트인 국가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내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와 담당자 연락처 상시 현행화 및 관리 철저
  - 시·군·구, 읍·면·동은 최신 민방위 담당부서(과) 연락처 업데이트
  - 각 시·도에 부여된 아이디로 접속하여 등록 변경, 필요시 국민재난안전포털 시스템 담당자(☎070-5008-6603)에게 요청
- 국민재난안전포털(민방위 사이트)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 관리자 계정을 마련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관리권한 부여
  - 시·군·구 및 읍·면·동 민방위 담당과 연락처 안내



#### 4 민방위 스팸문자 피해예방 홍보

---

- 교육일정, 훈련 등 민방위 관련 내용을 미끼로 스팸(스미싱)이 전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피해가 우려됨
-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방안 및 피해방지 마련 추진
  - 매년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대원을 대상으로 소속 및 임무 등 전달 시 스팸문자 피해예방 홍보도 병행 실시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시에도 스팸문자 피해예방 홍보 실시
  - 홈페이지, SNS 등 지자체 보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 지자체는 스팸문자로 악용되는 사례방지를 위해 문자안내서비스 금지. 단, 대원 본인 희망 시 문자안내 방법 및 피해 우려 등 인지 후 실시 가능







## VII. 참고자료

- 참고 1 화생방분대 편성요령
- 참고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 참고 3 민방위대 편성관련 주요 Q&A



## 참고 1 화생방분대 편성요령

## 1. 편성 기준

구분	편성지역	편성기준	인원	주요 임무	운영
기술지원대	전국	시·군·구 단위 1개 대	20명 (인구 7만이하 지역은 10명)	시·군·구내 오염지역 통제 (오염통제선 인근 제독 및 구호활동)	- 분대장은 화생방 담당 공무원이나 지휘능력이 있는 자 임명 ※ 장교, 부사관 등
직장대	100명 이상 직장대	1~2개 분대	10~20명	직장내 오염지역 통제	- 전문교육, 훈련참여 등

\* 화생방분대는 1~4년차 위주 구성, 10명 기준 반별(탐지반 4 : 제독반 6) 적정인원 편성

## 2. 편성 방법

## ①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 관련분야 자격·기술이 있는 직장대원으로 편성하고 자원부족 시 지역대원으로 편성  
\* 기술지원대원은 지역·직장대원에서 편성제외(이중편성 금지)
- 시·군·구청 공무원 대원 중 기술직공무원 우선 편성  
- 공업(환경·가스·화공 등)·보건직렬 공무원, 화생방 관련학과 출신, 관련업체 기술·자격소지자, 화생방교육 이수자 등 유자격자

## ② 직장민방위대 화생방분대

- 중대급(100명) 이상 규모의 직장대에 1~2개 분대 편성

직장대 규모	100 ~ 300명	300명 초과
분대 편성	1개 분대(10명)	2개 분대(20명)

\* 100명 미만 직장대의 경우, 자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편성 가능

- 관련 기술·기능소지자, 군 화학특기자, 관련학과 전공자, 화생방교육 이수자, 관련부서 종사자 등 유경력자 우선 편성
- 직장대 자체판단에 따라 화생방 취약시설 추가 확대 편성 가능

## 참고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

[별지 제6호 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

[별지 제7호 서식]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지원서

[별지 제8호 서식] 민방위 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

[별지 제11호 서식] 직장 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민방위 대원 명부

[별지 제13호 서식] 직장 민방위대 개편·해체 명령서

[별지 제14호 서식]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 7. 8.>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3일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본인과의 관계	
구분	지원기간	소속 민방위대	
	제외사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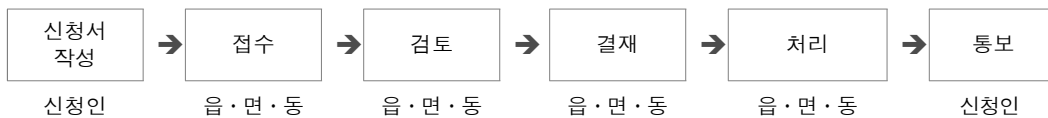
읍·면·동장  
직장 민방위 대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별지 제5호 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						
심사구분	제외사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	판정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별지 제6호 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심사결과			

위 사람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본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사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

○○ 읍·면·동장 ○○○ 인

210mm×148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별지 제7호 서식]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지원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세대주와의 관계	
	직업	학력	
보유기술 및 기능	종목		
	취득일		

위와 같이 신고(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고(지원)인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민방위대 편입 신고(지원) 필증

신고자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민방위대 편입신고(지원)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직장민방위대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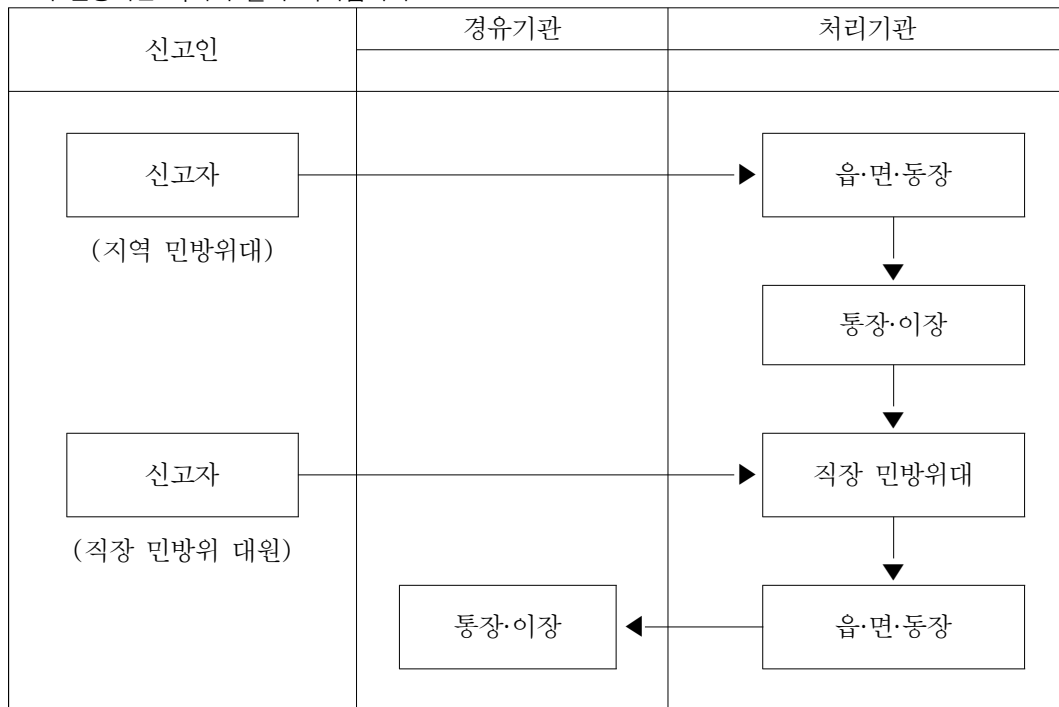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통 보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제 목 : 민방위 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

아래와 같이 편성(이동)되었음을 신고(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성명	주소	이동 사항	편성(이동) 신고(통보) 연 월 일	훈련상황		비고
	주민등록번호				참석	불참	

끝.

통 보 기 관 의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별지 제9호 서식]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자	성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업종				
소재지			전화				
지정신청사유							
민방위대 대상현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제대규모
	계	남	여		남	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려고 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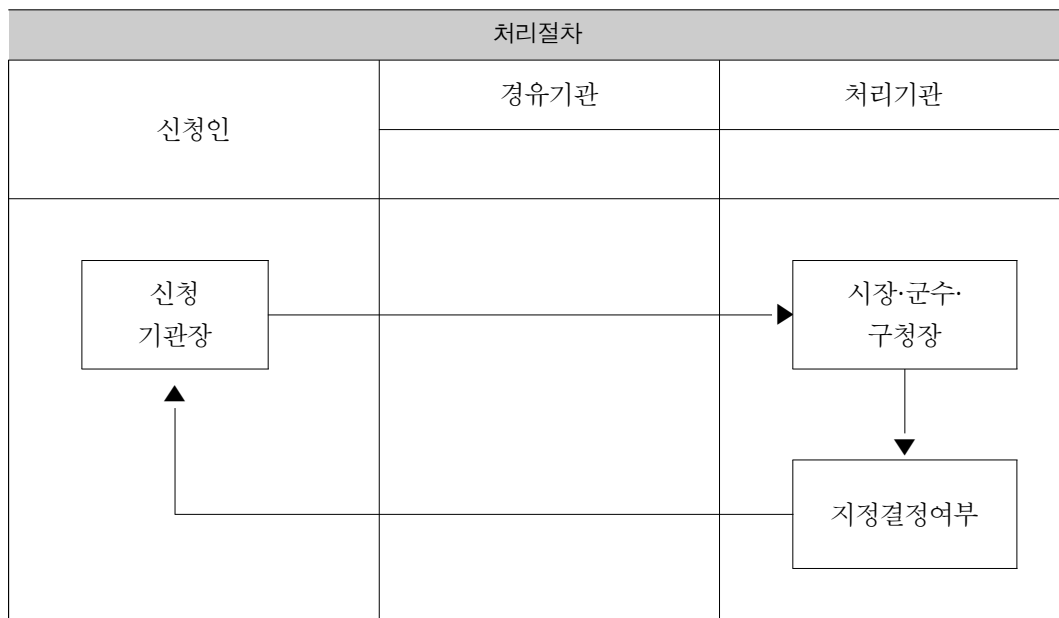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뒤쪽)





[별지 제11호 서식]

직장 민방위대  편성  
 이전 신고서  
 명의변경  
 해체

※ 아래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지원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민방위대	직장명	전화				
	소재지					
이전 또는 명의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이전·명의변경· 해체 사유						
신고사유 발생일						
편성상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계	남	여		남	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div data-bbox="268 1415 512 151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auto;">직장장</div>		<div data-bbox="970 1415 1235 151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auto;">시장·군수·구청장</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data-bbox="970 1603 1235 170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auto;">관계 기관</div>





[별지 제13호 서식]

직장 민방위대		[ ]개편 [ ]해체	명령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민방위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		
명령사항				
명령이행기간				
명령사유				
<p>「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시장(군수·구청장) ○ ○ ○ (인)</p> <p>○○○ 직장 민방위 대장 귀하</p>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별지 제14호 서식]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연합 민방위대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합민방위대	조직명	전화					
	소재지						
연합민방위대 대상 현황	직장(지역) 대수	자원					제대규모
		총계			세부내용		
	계	남	여	의무자	지원자		
					남	여	
신청사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조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합 민방위대 조직 대상 직장 현황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 서식]

(○ ○ 읍·면·동)

수신자  
(경 유)  
제 목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

귀하께서는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000 민방위대 000 분대반에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성시임무	민방위사태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li> <li>○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li> <li>○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li> <li>○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li> <li>○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li> <li>○ 자체 시설의 보호</li> <li>○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li> <li>○ 민방위 교육훈련</li> <li>○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수습·복구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 및 대피</li> <li>○ 주민통제 및 소산</li> <li>○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li> <li>○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li> <li>○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li> <li>○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li> <li>○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li> <li>○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li> <li>○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끝.

읍 · 면 · 동 장직인

기안자 (직위 / 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 / 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 - 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참고 3 민방위대 편성관련 주요 Q&amp;A

문 1

민방위대 편성연령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답}** 여기서 나이는 법정나이(만 나이)를 의미하며, 특히 경계에 있는 만20세 및 만40세의 경우는 1월 1일 ~ 12월 31일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1년에는 1981. 1. 1.부터 2001. 12. 31생까지를 의미합니다.

문 2

새터민(탈북자), 외국에서 귀화한자,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도 민방위대를 편성해야 하나요?

**{답}**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민방위대 편성대상입니다.

문 3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수술을 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주민등록상 남자로 된 자의 경우 민방위대 편성 대상이 되는지요?

**{답}**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항 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면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방위대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반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주민등록상 여자로 된 자의 경우는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4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였으나 법원 판결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민방위대 편성 대상이 되는지요?

**{답}** 법원의 판결을 받아 주민등록상 여자로 된 자의 경우에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심사를 통해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 5

한국과학기술대학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민방위대 제외대상인가요?

**{답}** 대학원·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석사과정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학기술대학의 경우에도 석사과정으로 한정하며, 박사과정 학생은 편성 대상입니다.



**문 6** 대학교 같이 4년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원에 다닐 경우 학생으로 민방위대 제외가 가능한지요?

**{답}** 학생으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한정되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직업교육학원 수강생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문 7**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민방위대 제외대상인가요?

**{답}**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도 석사과정으로 보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입니다.

**문 8** 대학교 휴학생의 경우 민방위대 편성 대상인지요?

**{답}** 학생의 경우 졸업·중퇴·휴학한 경우 민방위대 편성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학생의 경우에도 민방위대에 편성이 됩니다. 다만 병역법에서는 휴학생의 경우도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보아 입영연기를 해 주고 있어 휴학 중인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문 9** 병역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7급(재검사대상)판정을 받은 경우 민방위대 편성대상인지요?

**{답}** 7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결과 후 최종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여부를 결정됩니다.

**문 10** 현역 군인으로 근무 중 부상으로 의가사 제대한 경우 민방위대 편성대상인지요?

**{답}** 이 경우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 6급 판정에 준하는 부상판정을 받거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으로 인정된 자는 민방위대 편성 대상이 아닙니다.

**문 11** 예비군을 마치고 민방위대에 편입되면 민방위대 몇 연차로 편성해야 하나요?

**{답}** 민방위대 편성은 연령에 따라 편성을 하지만 예비군처럼 편성연차를 적용하지 않고, 교육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편성과는 무관하게 교육이수 여부를 가지고 연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는 민방위대 편성연차가 아닌 교육연차를 적용하며 1~4년차는 4시간 집합교육을 받고,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비상소집교육을 받고 있음

**문 12** 인턴과정의 의사인 경우 민방위대 제외대상인가요?  
**{답}** 민방위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입영연기중인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면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문 13** 의무적 편성 기관의 경우 민방위대를 편성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민방위대 지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 의무적 편성기관의 경우에는 직장민방위대 지정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문 14** 의무적 편성 기관의 경우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1명인데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야 하나요?  
**{답}** 의무적 편성기관(공공조합 제외)의 경우에는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1명에 불과하더라도 민방위대를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자가 20명 미만인 소규모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통합을 원할 경우 통합편성이 가능합니다.

**문 15** 의무적 편성 기관의 경우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0명인데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야 하나요?  
**{답}** 의무적 편성기관(공공조합 제외)의 경우에는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없다 해도 민방위대를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통합을 원할 경우 통합편성이 가능합니다.

**문 16** 직장민방위대 편성의무자가 직장민방위대 편성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이 있나요?  
**{답}** 직장민방위대장은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법 제20조 제1항),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20조 제4항) 그러나 편성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편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므로 법 취지상 편성의무자가 편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편성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 17**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규모 직장민방위대를 통합하도록 명령할 수 있나요?  
**{답}**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의 장이 직권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편성 여부도 직장의 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문 18

하사관이상 간부로 제대한 군인은 민방위제의 대상인가요?

**{답}** 예비군법 제3조 및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에 의거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군 연령 정년이 될 때까지 예비군 편성대상입니다. 하사의 경우 현역 정년이 40세까지 이므로 하사관 이상 간부로 제대한 군인의 경우 민방위대 편성제의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사유로 간부로 제대 후 예비군 미 편성 시, 민방위대 편성 대상이 됩니다.

문 19

지원공상군경도 민방위 제외대상인가요?

**{답}**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민방위편성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공상군경은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준하는 자로 판단되어 편성 제외함이 옳다고 판단되며, 다만 편성 제외 시 지원공상군경인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 20

사설교도소(민영교도소)의 교도관도 민방위 당연제외 대상인가요?

**{답}** 사설교도소 교도관이 제외대상인지의 여부결정은 교도소에 근무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아닌 교정직 공무원인지가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설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의 신분이 교정직 공무원인지를 확인하신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 21

비정규직인 경우 직장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없는지요?

**{답}** 원칙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따라 편성여부가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직장민방위대 편입에 대한 실익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장의 민방위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22

보호직으로 직렬이 통합됐는데 법정당연제외자가 맞는지요?

**{답}**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년보호직공무원이 법정당연제외자이나 소년보호직과 보호관찰직 직렬이 보호직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보호직공무원은 모두 법정당연제외자에 해당됩니다.

문 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등은 법정당연제외자에 해당되는지요?

**{답}**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격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내용상 같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자에 포함되어 법정당연제외자에 해당됩니다.

문 24

로스쿨 학생도 법정당연제외자가 맞나요?

**{답}**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도 법정당연제외자에 해당됩니다.

문 25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자도 법정당연제외자가 맞나요?

**{답}**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수료 후 특별보충 입영하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법정당연제외자에 해당됩니다.

문 26

은행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법정당연제외자가 맞나요?

**{답}**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주가 지방경찰청(경찰서로 위임)에 승인을 받아 배치한 정식 청원경찰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특수경비업법에 따른 업체직원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비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비원은 직장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 자체교육인정 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27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민방위대 편성대상인가요?

**{답}**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법 개정('15.1.22부터 주민등록 가능)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대상이나, 일반적으로 재외국민의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민방위 교육은 면제됩니다.



문 28

현재 예비군 7년차이며 예비군은 해외체류로 계속 보류(면제)중으로 계속 해외에 거주시 민방위도 자동 면제가 되는가요?

**{답}**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민방위대 편성 대상으로 귀하의 민방위대 편성은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만40세까지 편성됨  
다만,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사람은 민방위 교육이 면제되며, 면제 신청은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 및 면제사유 증빙서류(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등)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외 체류중으로 귀하께서 사전신청이 어려우시면 가족 및 직장 등에서 당해연도 12월 까지 사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29

1992년 출생(만 27세)이며, 2019. 7. 1.부로 병무청으로부터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처분을 받았는데,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민방위 훈련여부 및 년 몇회의 훈련은 받는지?

**{답}**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관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5급 전시근로역병역대상자는 군 복무 및 예비군 편성이 제외되므로 만 20세부터 민방위대로 편성(단 학생 등 편성 제외 대상 여부 별도 확인 필요)되며, 편성에 따른 연간 민방위 교육은 1년차(4시간), 2~4년차(4시간), 5년차 이상(1시간)이 부과됩니다.

문 30

현역부적합 심사로 보충역 전환된 후에 소집해제하고 5년동안 계속 예비군 보류상태인데 예비군 8년까지 보류 후 민방위 편성이 되는지 아니면 면제인지?

**{답}**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민방위대 편성 대상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조직하며,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되는 예비군 8년이 되는 해의 12.31까지 편성되며 민방위 교육훈련은 다음해부터 실시됩니다.

문 31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 병사로 군생활 도중에 현역 부사관으로 지원, 하사 임관하였으나, 현역 부적합 심사로 2009년 해임 제적되었으며 보충역인데,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대상자 여부와 미통지 경위는?

**{답}**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예비군이 아닐 경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으로, 2020년 민방위대에 편성하여 2021년부터 민방위 교육훈련이 부과됩니다.



**민 32** 4급으로 병역 의무 마친 후 예비군 2년차인 상태에서 신체등위 5급 판정받은 경우에 예비군 훈련 여부와 민방위 훈련 여부는?

**{ 답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예비군이나 학생 등이 아닌 경우에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임

**민 33** 혈액암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6개월) 및 별도의 통원 항암치료(2년간)가 필요하며 면역이 부족한 상황인데, 민방위 훈련 면제 또는 연기 가능 여부는?

**{ 답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인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편성제외 신청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인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귀하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 34** 미만성거대 B 세포림프종 판정을 받은 암환자가 되었는데 중증 암환자의 경우에는 향후 부과 되는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이 제외 되는지와 제외관련 필요한 서류, 제출 시기는?

**{ 답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인 심신장애인 또는 만성허약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편성 제외 신청은 예비군 편성의무 기간 만료 후에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인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민원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 35** '19.04.18 앓고 있던 크론병 때문에 서울 병무청에서 재신검을 받고 5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 민방위 편성 여부와 민방위 교육훈련이 이번년도인지 다음연도부터 실시하는지?

**{ 답 }**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5급 전시근로역 병역 대상자는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이며, 이번년도에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다음연도부터 민방위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함

다만,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제외 사유에 해당(군인, 경찰공무원, 교도관 등, 학생, 심신장애인, 만성 허약자 등)될 경우 에는 민방위대 편성 제외되며, 편성제외 신청은 본인이 구비 서류(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와 편성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절차(심의)에 따라 민방위 편성 제외가 가능합니다.



문 36

민방위 편성제의 대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 평생교육원(학점인정)의 교육을 받는 자도 민방위 편성제의 대상인지?

**{답}**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생으로 민방위대에 제외되는 경우는 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한정되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직업교육학원 수강생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이 아님

문 37

사이버대학교 학생도 민방위대 편성 대상제의 여부는?

**{답}**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제1항 제1호 가목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제1항 1호에 의거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 인정대학이 포함되어 사이버대학교 학생도 민방위대 편성제외자임을 알려드리며, 편성제외 신고는 학교의 장 또는 본인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람

문 38

현역병, 사회복무 소집되기 전에 민방위 훈련이 나와서 참석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제외 대상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및 소집이전에는 민방위 훈련은 제외되는걸로 해석되는데 소집일자가 정해지지 않는 이상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지 이의 사실여부와 소집이후로 민방위 훈련을 미루는 방법이 있는지?

**{답}**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민방위대 편성 대상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성하며, 민방위대 편성은 병역법에 의한 만 20세 이전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편정 결과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보충역 입영대상자는 군 복무 전 까지 민방위대 편성이 보류 됨

문 39

민방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소멸된 날부터라는 문구의 해석 관련 예를 들어 만약 직장을 오늘 3월27일에 그만두었다면 사유 소멸된 날이 3월 27일인지 3월28일인지가 궁금하며, 3월 27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3월 28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편성절차 등)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의 소멸된 날이란 “3월27일에 직장을 퇴사하였다면 3월 28일부터 1일로 계산하여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임